

電子商去來活性化를 위한 네트워크 情報仲介者の 責任에 관한 研究

裴正漢* · 金喆浩**

I. 序論

- II.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개념
 - III.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문제와 분쟁사례
 - IV.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보중개자의 책임문제의 해결방향
 - V. 結論
-

I. 序論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공간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는 전자메일(Electronic Mail ; E-Mail)이나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 유저그룹(User Group), 그리고 채팅(Chatting) 등 이용자 상호간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활동의 场으로서 사이버 마켓(Cyber Market)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광의로 복수의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상호접속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그중에서도 인터넷은 기존에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져 오던 컴퓨터 네트워크인 PC 통신과는 달리 E-Mail Address를 가진 어느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네트

* 嶺南大學校 通商 및 經濟學部 助教授.

** 釜山大學校 講師.

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이하 '인터넷 상거래'라 한다.)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암호화,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를 위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터넷을 상품광고, 기업홍보, 정보제공 등에만 활용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Network Wizards 사에 의하면 전세계의 인터넷 호스트(Internet Host)수는 1993년 1월 131 만 3천여개에서 1999년 7월 현재 5천 621 만 8천여개에 달하며, 인터넷 이용자수도 전세계적으로 2억 6천여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상거래시장규모도 1997년이후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는 6천억달러, 2005년에는 1조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이용증가와 이를 이용한 상거래시장규모의 확대와 비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한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정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그 특성상 기존 상거래의 관행 및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은 첫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던 기존의 일반 이용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순식간에 아주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달되어져 전세계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메일(E-mail)과 같이 1 대 1 또는 1 대 다수의 통신, 뉴스그룹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단발적인 배포, 인터넷 릴레이 채팅(Internet Relay Chatting)과 같은 문자에 의한 동시통신, 텔넷과 같은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의 원격조작,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을 이용한 정보의 검색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상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내용의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과정에서 정보내용이 원본과 꼭 같은 양질의 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의 대량유통이 가능하다.

넷째,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양방향성, 광역성, 대량유통성 및 익명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외설정보의 유통,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불건전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한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기존의 미디어에 있어서 정보중개자들은 정보를 배포하기 전에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관리·통제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중개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교환되어지는 정보를 사전에 관리·통제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건전한 정보유통을 촉진시키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중개자의 역할과 책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그리고 발생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또한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담당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법적 책임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검토·분석하여,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법적 책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고자 함이다.

II.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개념

1.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의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의 교환은 정보의 제공자와 그 정보의 수령자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들 정보교환에는 그러한 정보교환을 중개하는 중간자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예를 들면, 전화를 이용한 정보교환의 경우에는 전화국이, 출판

물에 의한 정보교환의 경우에는 서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정보교환을 중개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중개하는 자로서는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On-line Service Provider)라는 PC 통신업자와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 운영업자 또는 Web Site Operator 및 인터넷 엑세스 프로바이더(Internet Access Provider)로 불리는 인터넷 접속업자가 있고,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각 기업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이들 중 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중개하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초기의 PC 통신업자들은 자사의 호스트 컴퓨터를 중심으로 회원제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네트워크는 각각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다른 네트워크와의 통신은 불가능하였다. 즉, 현재에는 PC 통신업자로부터 전자메일의 어드레스를 부여받으면 인터넷상의 누구와도 전자메일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동일한 PC 통신업자의 회원간에만 전자메일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다른 PC 통신업자의 회원과는 전자메일의 교환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러한 폐쇄적인 네트워크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PC 통신업자들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업자와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네트워크 정보중개자(Computer Network Intermediary)라고 한다.¹⁾

2.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유형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는 대체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

1) 이러한 정보중개자를 총칭하여 On-line Service Provider(OSP)라고 하기도 한다(二關辰郎 譯, Deffrey P. Cunard · Jennifer B. Coplan · George Vradenburg, III, “米國インターネット法の發展狀況(1)”, 國際商事法研究會, 國際商事法務, Vol. 27, No.5, 1999, 525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PC 통신업자를 OSP로 부르고 있어 네트워크 정보중개자(Computer Network Intermediary)라고 한다.

하여 스스로 네트워크상에 컨텐츠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업자, 자신의 서버를 보유하면서도 제3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일반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제3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보존·관리하는 자 및 단순히 인터넷의 접속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할 수 있다.²⁾

(1) 컨텐츠 제작서비스업자

이들은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호스트 컴퓨터 내에서 자신의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컨텐츠의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컨텐츠 중계서비스업자

이들은 자신의 서버를 구축하고 있지만,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제3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제3자를 위하여 보존·관리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버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책임부담여부는 스스로 당해 컨텐츠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및 그러한 컨텐츠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기대가능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한다.

(3)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

이들은 단순히 인터넷에의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로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컨텐츠의 제작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주로 Portal Site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제3자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TDG 제5조.

3.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주요 서비스

(1) 전자메일(E-mail) 서비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용서비스로서, 사용자가 메모를 작성하고 개인들이나 그룹들에게 그것을 보내게 해 주고, 받은 메모들을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메일은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만 안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전화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만으로 가장 빨리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평상시에 비즈니스 통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메일시스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TCP/IP 프로토콜을 쓰는 것이 더욱 신뢰성이 있다. TCP/IP 전자메일전달시스템은 우편 메시지를 중계하기 위해 중간 기기들에 의존하는 대신,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직접 연락함으로써 동작한다. 따라서 송신자는 메시지가 일단 자신의 컴퓨터를 떠나면 상대방의 주소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2) 파일전송(FTP ; File Transfer Protocol)

사용자들이 종종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파일도 전송하지만, 전자메일은 짧은 텍스트파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FTP는 TCP/IP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파일전송을 하기 위한 표준명령으로 접속된 상대방 컴퓨터의 컴퓨터 기종과 상관없이 전송할 수 있다. FTP의 주된 기능은 파일전송이지만, 그밖에 파일의 삭제, 이동, 변경 또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FTP는 전자메일처럼 인터넷을 통한 파일전송을 전송도중에 수행하는 중계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관련된 두 컴퓨터가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

(3) 원격로그인(Telnet)

원격 로그인은 호스트와 터미널의 접속된 거리가 먼 경우,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호스트에 연결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즉, telnet을 이용하여 원하는 호스트와 접속을 하면 마치 직접 연결된 터미널과 같이 원격

지 호스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및 검색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오디오,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아직 통신망이 현재의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매우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웹에서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법인 아키나 고퍼는 각각 다른 검색방법을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여러 가지의 정보획득사용법을 익혀야 했으나, 웹에서는 인터넷의 각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된 통합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다.

검색엔진은 고유의 URL을 가지고 있어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 사용자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검색엔진은 검색어에 해당하는 웹서버들의 URL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기타

고퍼(Gopher)시스템은 미네소타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고퍼를 이용하면 Archie, WAIS(Wide Area Information System), FTP, Usenet news, 그 밖의 많은 서비스와 정보를 엑세스할 수 있다.

고퍼는 파일과 서비스에 대한 엑세스를 계층적 메뉴의 형태로 제공하는데 때때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는 다른 고퍼서버일 수도 있는가 하면, 파일시스템의 디렉토리인 경우도 있다. Archie는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익명의 FTP 호스트들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트를 검색하고, 검색한 자료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WAIS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WAI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자신의 호스트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퍼와 마찬가지로 서버 /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하며 데이터 자원의 탐색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WAIS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도 있고,

telnet을 통한 접속으로 원거리의 호스트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III.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 문제와 분쟁사례

현재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유익한 많은 정보들을 상호교환하고 있으나, 반면에 외설적인 정보, 위법을 조장하는 정보, 인종차별적인 언론, 반민주적인 언론 등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가 교환되는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어지는 유해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도 기존 미디어에 의한 정보교환과 같이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 미디어를 통한 정보교환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기능과 법적 책임의 문제가 중요하다.

1. 네트워크상의 분쟁발생원인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한 원인은 인터넷의 양방향성, 대량유통성 및 광역성, 익명성 등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의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들간의 이용관행 및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및 제도적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특히 네트워크상의 정보중개자의 법적책임문제로서 명예훼손 및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정보가 유통되어지기 전에 이를 스크린(screen)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저자로부터 원고를 받고서 편집과정에서 그 내용을 체크하여 명백하게 문제로 될 수 있는 표현을 저자와 협의하여 수정 내지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중개자는 출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교환에 관계하는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규제

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율적인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또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내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불건전한 정보유통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중개하거나 조장하는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이들에게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과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2.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문제

(1)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문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 중, 특히 商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게시판을 개설하거나 E-Mail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간의 정보교환을 중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컨텐츠(Contents)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개설한 전자게시판상에서 특정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 그 전자게시판의 운영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도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이다. 또한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때,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서버의 일부를 임대해 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특히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도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등이 문제이다.

물론 문제의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보중개자의 입장에서 문제의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제의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를 알 수 있었더라도 그러한 유해한 정보의 게재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약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문제의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네트워크 정보 중개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법적 책임문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부과시 고려사항

네트워크상에서의 건전한 정보의 유통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법적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이를 감시(monitor)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은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유통시키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에게 정보의 제작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에게 정보의 제작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중개자의 정보의 내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에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는 정보가 유통되기 전에 모든 정보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네트워크의 최대의 장점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억제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가 유통되어지는 모든 정보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자신이 검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업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둘째,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들은 이용자들에게 E-Mail 서비스, 전자게시판을 통한 정보유통 서비스, 직접 자신이 작성한 컨텐츠의 제공 등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정보중개자들에게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문제를 일괄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각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추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현재 네트워크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쟁들이 당사

자들간의 계약과 관행에 따라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에 이들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분쟁사례

(1)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

타인이 행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기존의 미디어에 있어서 정보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은 첫째, 서적, 잡지, 신문 등의 발행자(publisher)인 경우에는 저작자(author)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며,³⁾ 둘째 서점, 도서관 등 제3자의 발행물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distributor)인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knew) ‘알 수 있었던 경우’(had reason to know)에만 책임을 부담한다.⁴⁾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미디어에 적용되던 법리가 네트워크 정보중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⁵⁾은 CompuServe가 개설한 전자게시판에 원고(Cubby Inc.)를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정보중개자인 CompuServe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CompuServe는 동 전자게시판의 운영, 편집 및 내용의 통제 등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CompuServe의 전자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음을 CompuServe에 통지하지 않았었다. 법원은 CompuServe가 문제가 된 전자게시판의 편집을 완전히 제3자에게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제할 수 없었고, 또한 CompuServe가 전자게시판에 게재되어진 모든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CompuServe의 역할을 서점과 같은 유통업자(distributor)로 인정하고, 원고는 CompuServe가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 일체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기각하였다.

3) *Schicvone Cosstr. Co. v. Time, Inc.*, 735 F. 2d 94.

4) *Lewis v. Time, Inc.*, 83 F. R.D. 445(1979); aff'd, 719 F. 2d 549(1983).

5) 776 F. Supp. 135(S.D.N.Y., 1991).

(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건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건⁶⁾은 IBM이 운영하는 Prodigy Services 사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사용자 A가 운영하는 '머니 토크'라는 전자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정보중개자인 Prodigy Services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중개자인 Prodigy Services 사가 '머니토크'라는 전자게시판을 모니터하고 편집하기 위하여 전자게시판 운영자인 A의 행위를 관리하고 조정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된 계약자인 전자게시판 운영업자의 책임이라는 Prodigy Services 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BBS 등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정보중개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의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관리·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정보의 유통업자(distributor)가 아닌 정보의 발행자(publisher)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Louder v. CompuServe Inc.* 사건⁷⁾

본 사건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의 상업적인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아마추어 모델들과 사진사들의 이벤트에서 찍힌 80 명의 900 여장의 사진이 이들의 사전허락이나 보상을 제공한다는 조건없이 CompuServe의 온라인 사진도서관을 통하여 1995년 중반부터 출판되고 판매됨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ompuServe를 정보의 발행자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때, 정보중개자는 먼저 전자게시판에 게재되어진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나, 전자게시판에 광고를 하는 등 발행자로서 인정되어질 때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정보의 유통업자로 인정되어지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 1995 WL 323710(N.Y. Sup. 1995).

7) BC 153274(L.A. Cal. 1996).

(2)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

제3자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게시되어진 컨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웹사이트 운영업자나 인터넷 접속업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이다.

네트워크상에서는 정보의 복제 및 유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복제된 정보 역시 노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라는 목적으로 무상으로 교부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정보교환으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고유한 문제로 디지털기술의 성질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특히 웹사이트의 열람 및 전자메일의 송수신과 같은 온라인행위에 의하여 정보중개자의 서버에 게시되는 정보의 복사본이 자동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정하는 엄격한 책임조항을 문자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정보중개자의 저작권 침해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reproduce) 권리, ②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prepare derivative works) 권리, ③ 저작물을 일반대중에게 배포하는(distribute) 권리, ④ 언어저작물 등을 일반대중에게 공연하는(perform) 권리, 및 ⑤ 언어저작물, 회화 등을 일반대중에게 전시하는(display) 권리⁸⁾를 가지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행위는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그리고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를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가 위에서 열거한 배타적인 원고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직접 침해한 것을 입증하면 죽하다.⁹⁾ 따라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직접적인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정보의 삭제권, 이용제한권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예를 들어 PC 통신업자의 전자게시판, 자료실 등과 인터넷 서비스 업자의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정보중개자에게도 저작

8) 미국저작권법 제 106 조.

9)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862 F. 2d 204(1988).

권의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어떤 제3자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때, 피고가 침해를 인식하고 이러한 제3자의 침해행위를 초래 또는 야기시키거나 또는 이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인정되어진다.¹⁰⁾ 따라서 네트워크 정보중개자 중에서 PC통신업자는 전자게시판의 설비마련, 자료실운영을 위한 저장공간 마련 등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인터넷 유즈넷 뉴스서버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에 의한 정보의 게재를 전세계 각 서버로 보내주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보중개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통지를 통지한 후에도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하지 않는 경우에 정보중개자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중개자의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중개자가 직접 침해자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그러한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¹¹⁾ 예를 들어 전자게시판이나 자료실, 홈페이지 서비스의 공유영역 등에서의 정보중개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종량제이든 정액제이든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즈넷 뉴스서버역할을 하는 정보중개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없다.¹²⁾

(가) *Playboy Enterprise, Inc. v. Frena* 사건

Playboy Enterprise, Inc. v. Frena 사건¹³⁾은 피고 Frena가 전자게시판 운영업자이고, 그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서 이용자들간에 원고 *Playboy Enter-*

10) *Gershwin Pub. Corp. v. Columbia Artists Management, Inc.* 443 F. 2d. 1159(1971).

11) *Shapiro, Bernstein & Co. v. H.L. Green Co.*, 316 F. 2d. 304(1993).

12)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907 F. Supp. 1361(N.D. Cal. 1995).

13) 839 F. Supp. 679(N.D. Cal. 1994).

prise가 출판한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원고의 허락없이 디지털화하여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므로 제기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이러한 사진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서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알았으며, 그 후 곧바로 전자게시판에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고,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니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상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게시판 운영업자인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전자게시판상에서 그 저작물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시(display)·유통(distribute) 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피고의 인식은 저작권침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였다.

(나) *Sega Enterprise Ltd. v. Maphia* 사건

Sega Enterprise Ltd. v. Maphia 사건¹⁴⁾은 피고 Maphia가 유료 전자게시판 운영업자로서 그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원고의 게임소프트웨어(game software)를 원고의 허락없이 게재하므로 발생한 사례이다. 이 시간에서 비록 피고 자신이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 자신이 전자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교환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용자가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조건으로 이용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재하든가 또는 일정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혹은 기여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인 후, 최종적으로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전자게시판에서 게임소프트웨어들이 게재되거나 복제되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비의 마련, 관리, 원조를 포함한 복제행위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결국 기여적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는 기기를 광고하였고, 또한 판매 및 배포를 하였기 때문이

14) 875 F. Supp. 679(N.D. Cal. 1994).

다. 또한 법원은 공정한 사용(Fair Use)이 되기 위하여는 개인의 경우에 문예 저작물의 정당한 복제본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공정한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기타

상기 판례 이외에도 *Sega Enterprises Ltd., Inc. v. Sabella* 사건¹⁵⁾ 및 *Marobie-FL, Inc. v. National Ass'n of Fire Equip. Distrib.* 사건¹⁶⁾ 등은 정보중개자가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내용이 게시되어진 웹사이트의 호스트인 경우도 그 자신이 그러한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되어진 사례이다.

그리고 *Playboy Enterprises, Inc. v. Russ Hardenburgh, Inc.* 사건¹⁷⁾에서는 전자게시판운영업자가 파일의 게시를 장려하고 파일을 사전에 선별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과 직접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IV.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중개자의 책임 문제의 해결 방향

1. 자율적 규범의 형성 유도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현실사회의 법이 적용되어지고 재판권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적용되어지는 법규범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네트워크의 이용관행이나 기술적 발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중개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율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은 이종의 컴퓨터들이 상호 접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통의 기술적인 규범이나 IP 어드레스 및 도메인 네임의 할당 등 각기 다른 단말기 환

15) 1996 U.S. Dist. LEXIS 20470(N.D. Cal. Dec. 18, 1996).

16) 983 F. Supp. 1167(N.D. Ill. 1997).

17) 982 F. Supp. 503(N.D. Ohio 1997).

경간에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제거하면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여 왔다.¹⁸⁾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정보교환에 관한 법적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그 이용자간에 형성된 자율적 규제들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 특히 프리웨어(freeware)나 쉐어웨어(shareware)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관행은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개념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OP)로 하여금 1996년 12월의 베른조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을 개정하도록 유도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처럼 네트워크상에서 형성되어진 자율규범들이 실정법에 반영되어 새로운 법률의 발전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PC통신업자 등의 이용규약상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나 금지행위를 규정한 가이드 라인은 분쟁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가 충분하게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측면에서의 피해가 약자인 네트워크 이용자 내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판매계약 취소보증제도(cooling-off)나 반품특약을 널리 인정하는 약정을 채택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상의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와 제정

인터넷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상거래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은 전통적인 상거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에는 네트워크 이용자들간의 자율적 규범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및 규칙도 적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및 규칙의 제정도 필요하다.

18) <http://www.togane-ghs.togane.chiba.jp/netiquette/>참조.

19) <http://www.wipo.org/eng/general/copyright/wct.htm>참조.

그러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유통이나 전자상거래는 우리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실사회와 전혀 별개의 법률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3. 네트워크 분쟁처리기구의 설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창구의 역할과 또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알선이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재판 외의 분쟁처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설치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에는 그 광역성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외적 분쟁발생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거래와 구별되는 전자상거래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분쟁처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the Online Ombuds Office²⁰⁾나 Virtual Magistrate²¹⁾ 및 일본의 Virtual World Company Cyber Rescue²²⁾ 등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어드바이스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신속하고도 저렴하고 또한 유연성 있는 분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는 네트워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당사자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또한 어떻게 적법한 절차 및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기구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분쟁해결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의 소송권을 배제시키지 못하고, 또한 분쟁처리기구의 결정이 양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20) <http://www.ombuds.org/>.

21) <http://www.vmag.law.vill.edu:8080>.

22) http://www.asahi-net.or.jp/de7t-kjm/cyber_rescue/cr_index.htm.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사중재제도나 네트워크상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이들의 판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습, 관행 및 규칙들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V. 結論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비례하여 인터넷의 이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주로 인터넷의 양방향성, 정보의 대량유통성, 광역성, 익명성 등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네트워크의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들간의 관행 및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 및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유통 및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중개자의 법적책임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의 이용 및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들간에 소비자의 지위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상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관행이나 규범들을 실정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네트워크 이용자 및 네트워크 정보중개자가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 및 분쟁해결기구의 확립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실세계와는 전혀 별개의 법률원칙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남 광,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법무부, 통상법률, 1997. 8.
-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 제 11 권, 1998. 2.
- 윤광운·장두채·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 32 권 제 1 호, 1997.
-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1999. 6.
- 岡村久道, “インターネットをめぐる法律問題”, 自由と正義, 1996. 6.
- 内田 貴, “電子商去來と法”, *NBL*, No. 600 - 603, 1996. 9. 1- 10. 15.
- 牧山嘉道, “美國における商標ダイリューション法による著名商標の保護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研究會, 國際商事法務, 第 26 卷 第 1 號, 1998. 1.
- 米丸恒治, “インターネットの構造と規制”, 日本評論社, 法律時報, 第 69 卷 第 7 號, 1997. 6.
- 小橋 馨 譯, Rigo Wenning, “ドイツ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の責任”, 日本評論社, 法學セミナー, 第 529 號, 1999. 1
- 松本恒雄, “インターネット上の取引と法”, 日本評論社, 法律時報, 第 69 卷, 第 7 號, 1997. 6.
- 鈴木秀美, “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の刑事責任”, 日本評論社, 法律時報, 第 71 卷 第 4 號, 1999. 4.
- 郵政省, 電子商取引に關する検討課題について中間報告まとめる, *NBL*, No.593 1996. 5. 15.
- 二關辰郎 譯, Deffrey P. Cunard · Jennifer B. Coplan · George Vradenburg, III, “米國インターネット法の發展狀況(1), (2), (3), (4)”, 國際商事法研究會, 國際商事法務, Vol. 27, No. 5, 6, 7, 1999.
- 町村泰貴, “インターネット上の紛争とその解決”, 日本評論社, 法律時報, 第 69 卷 第 7 號, 1997. 6.
- 平野晋, “サイバースペース法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裁判管轄權”, 國際商事法務研究會, 國際商事法務, 第 25 卷 第 8 號 - 第 26 卷 第 4 號, 1997. 8- 1998. 4.
- 後藤啓二, “コンピュータ・ネットホト-クにおけるポルノ問題(上), (下)”, ジュリスト, No. 1144 - 1145, 1998. 11. 1 - 15.
-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 Company, 1996.
- Computer Industry Almanac Inc. '98. 9.(<http://www.c-i-a.com/199809iu.htm>)
- David R. Johnson and David Post, "Law and Boarders-The Rise of Law in Cyberspace", *Stanford Law Review*, Vol. 48, 1996. 5.
- Elena N. Broder, "(Net)workers' Rights : The NLRA and Employee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Yale Law Journal*, Vol. 105, No. 6, 1996. 4.
- Eugene Volokh,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Law", *Standford Law Review*, Vol. 47, 1995. 7.
- John Petty Barow, "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http://www.eff.org/pub/Censorship/Internet_censorship_bills/barlow_0296.declaration)
- Lawrence Lessig, "The Zones of Cyberspace", *Stanford Law Review*, Vol. 48, 1996. 5.
- <http://203.240.9.7/nal/3/3-1-2/issu-153.htm>.
- http://www.asahi-net.or.jp/de7t-kjm/cyber_rescue/cr_index.htm.
- <http://www.krnic.net/index-g.html>.
- <http://www.law.georgetown.edu/lc/internic/rec1.htm>.
- http://www.loundy.com/CASES/PEL_v_Chuckleberry.html.
- <http://www.nw.com/zone/host-count-history>.
- http://www.nw.com/zone/2_93_00.html.
- <http://www.nw.com/zone/WWW/report.html>.
- <http://www.ombuds.org/>.
- <http://www.togane-ghs.togane.chiba.jp/netiquette/>.
- <http://www.vmag.law.vill.edu:8080>.
- <http://www.wipo.org/eng/general/copyright/wct.htm>.
- <http://www.wipo.org/eng/internet/domains/index.htm>.

ABSTRACT

A study on the Network Intermediary's Liability for Developing Electronic commerce

Bae, Jung Han · Kim, Cheol Ho

On increasing a computer network, internet usage, it has been created for Electronic Commerce to place a cyberspace. This cyberspace is limited to apply for contemporary usage and law because it have distinct characters now.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dispute will be happened in these cyberspac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putes cases related the computer network intermediary's liability and studies a reasonable improvement ways for developing Electronic Commerce. It has been limited to apply the usage and law the network which can be happened a dispute and has not involved usage and law using computer network yet. Therefore, we should make a self-regulation each other who use network and improved the usage and law involved the network through these methods. We should also establis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ry to settle dispute in the cyberspace

Key Words :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